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
----------	---

제출년월일 : 2000. 2. .
발의자 : 김판조의원
의 2인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근거

-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2

3. 주요골자

- 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시 적용하는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함.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1항제1호, 2호 중 “회의수당” 을 각각
“회기수당”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증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 金判祚議員 外 2人 發議 —

서명날인서

의원명	서명	날인
김판조	김판조	
도기태	도기태	
이정재		